

제429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2월1일(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5.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6)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7.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8.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9.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9)
10.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11.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12.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0)
13.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1)
14.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2)
15.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16.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1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상정된 안건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2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2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2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피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10시05분)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에 4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2페이지 1번 도시조합 정의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조합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현행 농협중앙회 규정에 있는 총자산 50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4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도시조합의 세부기준에 대한 규정 방식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도시조합 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6페이지, 2번 도시조합의 도농상생협력의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또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10조에서 이미 다른 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는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정안과 같이 도시조합에 대해서 이런 의무, 책무 규정을 다시 만들 실익이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조합의 협력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고 그 책무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생의무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등’이라는 불확정적 용어의 사용이 책무의 대상을 불명확하게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도시조합의 상생협력의무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현행법에 동일 취지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 동일 취지 규정이 어디에, 몇 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현행에 보시면요 바로 10조에, 항 구분 없이 10조 하나만 조문이 있는데 이 조항이 약간 유사하다고 봐서 그런 의견을 애초에 농식품부가 제기했는데 저희 수정의견은 이 조항이 있더라도 별도로 개정안에서 규정할 실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행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이 신설되는 2항을 다 포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아니요, 그런 의견을 농식품부가 제기했는데 저희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2항을 만들 실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희 위원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합의 비도시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조합이 비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도시조합 간 또는 비도시조합 간에도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조합 상호 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도시조합이 비도시조합에 자금 지원하는 안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0페이지, 4번 도시조합의 연도별 농산물 판매목표액 설정에 관한 내용은 도시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과 비도시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도시조합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사업 비중이 축소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142조 2항에 따라 매출액 대비 경제매출액 최저의무기준 25%에 미달하는 경우에 경영 개선 요구나 합병 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판매목표액 설정이 불필요하다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목표액 설정 관련해서는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듯이 조항이 있고 실제로 중앙회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만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실익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농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해도……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내용이니까 여기다 명기는 하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법은 없었더라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있기 때문에 굳이……

○소위원장 윤준병 알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도시농협의 경우 경제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 마트 중심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마트에서 공산품의 비중이 도시농협의 경우 훨씬 더 높을 텐데 농협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거는 농산물에 대한 경제사업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노력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용사업이 있고요 마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사업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경제사업 중에서도 공산품이 있고……

○임미애 위원 마트의 경제사업에 주로 공산품의 비중이 높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농산물의 비중을, 기본적으로는 도시조합 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직전년 평균의 50%는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최저 25%까지 밑으로 못 내려가게 농산물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트 전체가 아니고요.

○임미애 위원 농산물의 목표가 그러면 50%이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기본적으로요.

○임미애 위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최저 25%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매출액 기준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25% 이하를 해서 경고를 받거나 했던 조합들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26개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26개. 그런 조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조치는 지금 경영 진단이라든지 경영 개선 이런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조치가 작년 한 해가 아니라 최근 5년 전부터 계산을 해 본다면 그런 조치가 취해져서 경고받은 경우에 개선이 좀 되었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건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되려면 적어도 권역별로, 농협에서 운영하던 어디서 운영을 하든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들이 도시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농협의 지역조합이 신용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도록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낸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경고를 해도 아무 조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후에?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이 규정을 둔다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그런 건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이걸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유명무실화돼 있다 하는 인식이 있어서 법률에 이 내용을 보다 좀 강조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만약에 이게 저희들 거라면 괜찮은데, 10페이지 아래쪽에 주석으로 142조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중복된다는 의미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조항이 중복됐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중복되기 때문에 이 조항 없더라도 가능하고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 조합이 3년간 계속 경영 개선 권고를 받는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거고요. 저희들이 제도 자체를, 시행지침이라든지 그걸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넘어가도 될 텐데 이 조항의 실효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

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조합이 3년간 계속 받는다면 이 제도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 저는 여기에 신설되는 조항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연도별 판매목표액이 아니라 목표액보다는 전체적인 비중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농협의 다른 조합, 그러니까 도시조합들이 이외 다른 조합의 어떤 생산품이나 판매분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의견이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항은 놔 두고……

○**소위원장 윤준병**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 내용은 일단 보류하고 뒤에 중복된다는 규정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율로 하고 있고요. 개정안 보시면 만약에 비중이 낮으면 사업비를 더 낼 수 있도록, 그런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2페이지, 5번 도시조합에 대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에 따른 도농상생기금 출연금을 도농상생사업비로 변경해서 도시조합으로 하여금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규정에 따른 도농상생기금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있는 장기대여금 형태로 전년도 신용매출 총이익 3% 이내에서 농협중앙회 전무이사가 정하는 비율만큼 출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단 표에서 보시듯이 회계처리 등에 있어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농상생사업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농상생사업비가 기존의 도농상생기금과 달리 조합의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조합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서 납부를 경감·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도농상생사업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도농상생사업비를 중앙회가 도시조합으로부터 납부받는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상속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

니까, 이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지금 법률자문을 받아 보고 있는데요. 국세청 쪽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조합들이 자기들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출연하고 기금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실무자 입장은 아마 과세 대상은 아닐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순조롭게, 제가 알기로는 지역농협 좀 어려운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로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괜히 흔들 필요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 제도를 흔드는 건 아니고 무이자 자금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다시 도에서 기금을 사업비로 만들어서 그런 데를 더 지원하자는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가 없으시면……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지금 정부 측 답변이, 저도 이게 기금으로 하든 사업비로 하든 성격 자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데, 증여세 과세 대상 부분들은 확실히 정리한 후에 정리되는 게 안 낮겠습니까? 지금 들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기금 차액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사업비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예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사항인데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확인 중이라는 얘기만 하고 실무자는 아닐 것 같다는 정도거든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예전에 논의할 때 사실은 중앙회에서 동의했던 내용이에요.

○**이만희 위원** 아니, 중앙회에서 동의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했는데 이 내용은 사업비 말고도 지금 조합 간에 사실은 일부 염출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쓰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증여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자금도 다 저촉되는데 도시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중앙회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실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정리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실제 되면 법사위에서 쟁점이 될 거 잡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에서 증여세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5페이지, 6번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개정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앙회가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를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

금을 조성하여 도시조합과 비도시조합의 공동수행 사업 또 도시조합과 비도시조합의 상생협력 활동 등에 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영에 대해서는 대안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단어 하나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16페이지, 134조의7 3항 3호에 보시면 ‘그 밖에 134조의8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이 작업은 상생협력위원회를 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농협에서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서로 돕기 위한 건데 그거는 내부에 위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문구만 ‘중앙회에서’라고 하는 게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내용은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괜찮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만희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7페이지, 7번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중앙회에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중앙회 규정인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에 따라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를 이 법 개정안에서는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또 심의·의결사항에 도농상생자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애초에 개정안은 돼 있었는데 방금 수정하신 사항에 따라 이 내용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과 같이 중앙회 내부규정으로 존치시키자는 농식품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농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다른 내용과의 정합성을 일정 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설치 근거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그래서 세부사항, 위임사항 같은 거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7번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관으로 정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20페이지, 8번 경제사업 기준 이행 평가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이 회원의 경영 상태 및 경제사업 기준 이행 현황을 평가한 후에 가능한 조치로 기존에는 경영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다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요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또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년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도농상생사업비 외에 추가 납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서 자구를 수정하고 또 추가 납부 요구 상한을 적정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좀 전에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경제사업 기준 이행 평가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요구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이행 담보하기 위해서 100분의 3인데 5까지 이렇게 올려서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실효적인 수단을……

○소위원장 윤준병 수단을 확보했다 이런 취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 보류했던 내용도 반영하지 않는 거지요? 현행대로 그냥 놔두는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럼 얼마를 납부하나요? 3% 납부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윤준병 원래는 3% 납부인데……

○이만희 위원 지금 2.5% 아니에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이만희 위원 아, 그건 지원비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이 원래는 3%인데 이행을 잘 안 하면 2%를 더 얹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22페이지, 9번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련 규정 신설에 관한 개정안은 현재 중앙회 정관과 또 아까 말씀드린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가 자금 규모 또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금지원심의위원회가 의결하여 확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금 배분에 있어 회장 등의 자의적 영향력 행사를 통제함으로써 자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23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안 제136조의2제3항 자금지원심의위원회 외에 안 제136조의3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 136조의4를 보시면 자금운용계획 통지,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등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회원조합이 아닌 외부에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개 사항의 구체적 내용도 정관으로 위임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24페이지부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련 규정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정확하게 수정의견이 어떤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먼저 개정안에서는 자금선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그런 안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자금지원심의위원회를 또 개정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기능이 약간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자금선정위원회에서 할 일을 자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된다고 봐서 삭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28페이지, 10번 지역농협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도입에 관한 개정안은 지역농협이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농협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는 대상에 감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는 대상에서 감사를 제외하고 또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역농협의 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 도입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전종덕 위원 준법감시인하고 감사하고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감사는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업무를 감시하는 사람이고요. 준법감시인은 감사 밑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정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감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전종덕 위원 준법감시인은 외부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지는 않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내부 직원이고 감사가 외부 직원이고……

○전종덕 위원 그럼 감사위원회에 직원을 1명 두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윤준병 실제 직원이 조직생활 하면서 실제 법규 위반사항이 없는지, 법규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감사에게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준법감시인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작동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운영하는 내용은 또 한번 하기로 하고, 제도는 두는 것이 바람직하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런 제도는 농협중앙회 내부에도 있고요. 물론 내부 직원이 하니까 안 될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실효성에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직원들 중에서 뽑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직원.

○이만희 위원 자격요건이 직원이어야 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만희 위원 이 사람이 어떤 특수한, 특별한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아니면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 같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변호사 출신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분은 정관에 따라 쪽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규정한 절차대로 안 한 것 그걸 집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만희 위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이렇게 해 놔는데 이걸 대통령령으로까지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약간의 전문성은 있어야 되고 해 가지고……

○이만희 위원 준법감시인은 직원 중에 뽑는다고 그러는데 직원 중에 뽑으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라는 데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소위원장 윤준병 감시인은 의무적으로 뒤야 되고 직원 중에서 하는 것은 임의사항이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앙회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희 위원 알겠는데 수정의견 2항에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써 놓고, 제가 물었잖아요. 자격

요건이 뭐냐 이러니까 ‘직원입니다’ 이러잖아. 그런데 ‘직원입니다’를 대통령령에까지 위임을 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이 아니었고요. 아까 전종덕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게……

○**이만희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 뭐니까, 준법감시인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중앙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 내부규정에 금융 업무 쪽을 한 10년 이상 한다든지 그걸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중앙회와 유사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31페이지, 11번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기준 운영 실태점검의 무화에 관한 개정안은 중앙회가 중앙회의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취약 부분을 내부통제 기준의 개선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내부통제 기준 실태점검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33페이지, 12번 조합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일원화에 관한 개정안은 현재 현행법 제45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 가지 조합장 선출방식, 즉 직선제, 간선제, 호선제를 직선제로 일원화하여 농협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선출방식이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조합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일원화에 대해서는 아마 직선제를 하게 되면 조합장 뽑을 때 상당히 투명성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상임조합장도 있고요 이게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개정하는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제도 자체가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거는 비상임조합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선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선제로 뽑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든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모두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행사하겠지, 이런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직선제를 하게 되면 상임을 해 주고 책임을 지우되 처벌은 강하게 하는 그런 일관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부분은 어쨌든 논란이 있으면 뒤로 미뤄 놓고 할 건데, 지금 간선제 있잖아요. 간선제가 지역조합의 비리를 유발하는 상당한 요인 중의 하나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위원님, 저는……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우리 농협 개혁할 때 이 부분은 꼭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걸 위원들이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부분은 논란이 있으면 뒤로 미루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하여튼 선거 투명성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뒤로 미뤄 놓고요.

○이만희 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지금 우리 조합이 1111개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1110개.

○이만희 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99.5%가 조합원 직선으로 한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걸 솔직히 말하면 직선제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5개만 지금 대의원 간선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만희 위원 어느 조합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이만희 위원 5개니까 한번 다 불러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역농협이 5개고요 품목조합이 15개고 해서 20개입니다.

○이만희 위원 20개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역조합입니다. 그런데 품목조합이 또 따로 있어서 그거 합치면 20개입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20개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로 어떤 걸 내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간선제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무래도 선거 비용이 덜 든다거나, 내부 사유가 많이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선거 비용이 덜 든다거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도일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1111개 조합 중에 20개가 간선제 하는데 ‘내가 비용이 더 들어서 나는 간선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사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직선제 하게 되면 비상임조합장부터 해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

데 그 문제가 많은 것들을 대다수의, 99.5%의 조합원들이 채택을 합니까?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가 많은 제도를 채택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위원님, 저는 찬성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소위원장 윤준병 찬성하면 찬성하는 거지 무슨……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같이 검토해서 그 제도를 같이 고쳐 주는 게 가장……

○이만희 위원 뭐를 같이 검토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비상임조합장 문제하고요 직선제 문제하고 같이 고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하여튼 이 내용 좀 이따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우리 농식품부의 입장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저 통계를 보면요 비상임조합장이 500개나, 많이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거는 비상임조합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선거만 놓고 보면 아무 관계가 없이……

○소위원장 윤준병 5개가 비상임조합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다른 물인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뭐가 아니긴 아니야. 자꾸 우기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자, 보류하고 뒤에 하고 추후에 와서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설명 좀 들어 보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뒤에 있는 내용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 심도 있게 얘기하자고요, 이것 때문에 길어지니까.

○전종덕 위원 지금 간선제 하고 있는 데가 5개인가요, 20개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20개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 품목조합이 15개……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이 조항은 지역별 조합만 바꾸겠다는 얘기에요, 품목별 조합은 그대로 놔두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별 조합 5개 바꾸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 안 된다고 다른 거……

비상임조합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말씀드렸듯이 반입니다. 500개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위원장 윤준병 자꾸 제대로 이해도 못 하면서……

○이만희 위원 마음이 급하시네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빨리해야 되니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39페이지, 13번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재

상임조합장에게만 적용되는 2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비상임조합장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으로 조합장의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현재 비상임조합장에 대한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개정안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을 수용하는데 여기 조합장 직선제는 반대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직선제는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리바이벌하지 마.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비상임조합장하고 상임조합장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말씀드리면 상임조합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당사자입니다. 그 조합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은 있는데 옆에 물려나 있고 옆에 있는 상임이사라든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본인은 옆에서 다 관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선제로 뽑혔는데 내가 옆에만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기업의 등기이사 제도처럼 내가 회장인데 등기이사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등기이사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지시는 대주주가 했던 말씀이지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뽑아 놓으면 비상임조합장들 책임 하나도 안 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 줘야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그게 된다는 제 말씀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 조합이야말로, 이 결정이야말로 굉장히 지역농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임조합장은 어떻게 상임조합장에 관여한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큰 조합은 비상임이지요, 규모가 작은 조합은 상임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만희 위원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것도 이상했어요. 규모가 크면 오히려 상임조합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붙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규모가 작으면 오히려 비상임이 하는 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전문성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비상임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신용사업이나 이런 쪽에는 상임이사 같은 분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제한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문성이 있는 상임이사가 하는데 결국은 비상임 조합장이 다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는 책임 안 지고 오히려 상임이사를 뽑아 놓음에 따른 비용만 들어간다는 외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는 일관성 있게 고쳐야 되는 게, 같이 연계해 봤으면 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상임조합장을 두느냐 비상임조합장을 두느냐 기준이 자산 2500억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2500억입니다.

○임미애 위원 자산 2500억 규모 이하인 곳이 지금 500여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500개 넘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2500억이 넘는 곳의 경우 비상임조합장으로 할지 상임조합장으로 할지 선택의 권한은 따로 있지 않은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2500 이상 되면 상임이사를 두기 때문에 사실 선택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선택권 없이 자산 규모로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상임이사를 뽑아야 되니까요. 그걸 기준을 뒀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간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산 규모 혹은 상임이나 비상임이냐의 그 기준으로 금융사고 발생 비율이 어느 곳에서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거는 없었고 지금 파악을 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연임 문제가 많이 나오는, 지적되는 문제들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도시농협이거든요. 일부 도시농협에서 10선, 11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태도 하는 사항들인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이 문제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비상임조합장들에 대한 일정한 연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 중의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야말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의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좀 보류했다가 조금 이따 끝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시지요, 이 부분은.

○전종덕 위원 저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 윤준병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저는 비상임조합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 병폐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비상임조합장이 그동안 자리 유지 이런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임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의 역할이 이렇게 구분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상무도 있고 전무도 있고 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임기를 통합한다고 하면 굳이 비상임조합장을 둘 이유가 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현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의안이……

○전종덕 위원 제도가 아직 안 바뀌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안 바뀌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는, 좀 유사한 제도는 같이 검토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나가는 게 현장의 오해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2건은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43페이지, 14번 중앙회 이사회 및 임원에 경제·금융지주 대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또 중앙회와 계열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법인의 독립성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경제·금융지주를 중앙회에서 분리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중앙회 이사회 및 임원에 경제·금융지주 대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중앙회와 대표는 지금 분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중앙회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 버리면 총회 권한에 대한 침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이거 정부가 안 받는다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안 받는다고……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겠다고.

○임미애 위원 현행대로 하는 이유가 사실 잘 납득이 안 가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유를 좀 말씀을……

○임미애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저희들이 중앙회를 만들 때 중앙회 간섭을 배제하

기 위해서 금융지주라든지 축산경제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시 중앙회 올라와서 하게 되면 업무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대표들은 그 지주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앙회 일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상법상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회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총회를 거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규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를 한다면 다른 분들은 좋은데 이런 규정은 사실 약간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꼭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후에, 어차피 정부가 지금 농협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 이후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 전체적인 틀을 볼 때 한번 더 보려고 여기서 가능하면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농협중앙회 전체 체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할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때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0페이지, 15번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신설에 관한 개정안은 현행 인사추천위원회 규정에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후보자를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이나 심사절차, 심사기준에 관한 그런 규정들은 정관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운영상 세부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52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신설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라는 단어를 한두 개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52페이지 보시면 125조의5제2항입니다.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해당 인사를 새로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인사를 궐위시키고 다른 데 선출할 이런 오해를 유발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궐위되어 새로운 인사를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게 되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알았어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리고 53페이지 4항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제1항에 따른 인사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소위원장 윤준병 좋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면 자구는 추가로 한번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임원 인사 운영 관련해서 임원에 대해서 공개모집,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은 공모를 할 수 있지만 위원회 구성해서 추천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공모 말씀입니까?

○이만희 위원 '공개모집 의무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데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어떤 문구……

○전종덕 위원 지금 현행 법적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 규정은 없는데 법률로 인사위원회 만드는 걸 올린다는 규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가 지금 비공개인데 완전히 공개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로 올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이만희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53쪽 8항 보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를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의무조항을 재량규정으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넣어 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의무화……

○이만희 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전에는 모집을 어떻게 했냐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지금도요, 공개모집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모집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 추천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해서 그 명단을 올려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개모집을 의무화로 하지는 않습니다.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인사위원들이 추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답변 참 이상하게 한다.

그동안에는 공개모집을 재량규정으로 해 놓다 보니까 사실상 공개모집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모집이 필요하다,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공개모집을 의무화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넣어 놔는데 여러분들은 그것 또 재량규정하고 똑같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해 온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게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최소한도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라도 해야지, 최소한도 재량으로 넣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만약에 띄워 버리면 인사……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원칙으로 하면……

○이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 좀 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 임원이다, 전부 뽑는다 그러면, 공개를 하게 되면 아마 수천, 수만 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이고 참! 아이고……

차관이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인사는 원칙이 공개모집이에요. 공개모집인데 관할 상 그게 제대로 안 됐지요. 그리고 중앙회장이 찍어. 그러니까 인사가 중앙회장 손안에서 노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그래서요…… 물론 관계……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런데 ‘그래서요’가 뭐예요, 그래서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앙회장이 찍었다고…… 물론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포인트는 중앙회장이 인사에 개입 못 하게 한다는 거지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위원장 윤준병 아이 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원칙으로 하되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원칙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준병 원칙을 기본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처럼 찍어서 내려올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공개모집을 해서 우수한 인재들 널리 용인해야지 지금처럼 인사하면서 자기 선거 공신이나 다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그것은 지금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사 절차가 복잡해져서 뽑기도 힘듭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참, 인사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 위원님, 저는……

○소위원장 윤준병 기관장들 지금 다 공개모집해요.

○문금주 위원 차관님, 정부 새로 들어와서 최근에 국민추천제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인사가 그래서 어려웠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금주 위원 아니, 본인하고 아무 관계 없어도 정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요. 아마 제가 추측으로는 추천이 많이 들어온 어떤 직위는……

○**문금주 위원**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는 들어왔겠지요. 많이는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사시스템 자체가 불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복잡해질까 봐 그런 우려였습니다. 저는 시스템은 되게 좋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농협중앙회 또 농협이라는 것은 협동조합 구조입니다.

그러면 협동조합 구조에서는 인사의 모든 부분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개모집 또 공공기관 임원후보 공개모집, 이게 방식이 다 다른가 봐요? 그리고 또 현행 규정 이런 사항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찍어서 내려 가지고 하면 그 찍어서 내려 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성격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을 부정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은 사실 그것하고 또 달라요.

○**이만희 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래요.

○**이만희 위원** 그것 다르다 하는 얘기는 위원장님 생각이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럴 수도 있겠네. 죄송합니다.

○**전종덕 위원** 생각을 이야기하시니까, 제 생각은 농협중앙회 회장 바뀔 때마다 보은 인사 또 인사 비리 이런 것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아직도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임원들을 선출하는 시대는 이제 안 맞지요. 공개모집은 당연한 원칙인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고요. 행정절차의 복잡함을 이유로 인사의 투명성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맞지도 않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찍어 내리는 인사 이런 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개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농협이 처해 있는 인사 비리라든지 인사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공개는 기본원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부분도 논의가 있으니 좀 뒤로 미루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5페이지 16번, 인사교류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농협중앙회 내규인 인사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인사교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중앙회와 지주회사 간 또 지주회사 상호 간 인사 교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농협중앙회 내부의 인사 교류 사항까지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인사교류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왜 발의하셨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내부의 인사 교류는 자기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해서, 내부 정관으로 정해서 자기들이 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게 있어요?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것 이후에 농협에 대한 감사 결과 나오고 나서 그때 다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때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 이런 뜻이지요?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7페이지, 17번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또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해서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중앙회 정관 및 앞서 언급한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조합운영협의회 등 조합장이 참여하는 각종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사안별로 또 탄력적으로 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률에서 포괄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장단점을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도 협의회 성격상 농협중앙회 거버넌스의 일부가 되기 참 힘듭니다, 협의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73개나 있고요. 이것도 내부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것도 추후에 별도 입법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18번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에 관한 3건의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그 명칭 사용의 대가로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현행 영업수익, 즉 매출액의 2.5%에서 이를 5% 또는 3%로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회원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부과율 상한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이라든지 농업지원사업비가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을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지비 부과율 상한에 대해서는 이원택 의원안인 3%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 하면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답은 없는데요, 3.5%도 가능합니다만……

○이만희 위원 3.5%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왜냐하면 어차피 정관에서 정하는 건데 이것 쥐도 그 범위는 정관에서 정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실링을 좀 높여 줘야 서로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이지, 지금도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그래서 하는 건데 5%로 늘린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3.5%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3.5%.

○이만희 위원 이게 범위만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다시 의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러면 3.5%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62페이지, 19번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에 관한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농업경제지주회사의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점검 시에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또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64페이지, 20번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16년 형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에 따른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입법에서도 많이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역농협 임원 결격사유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66페이지, 21번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또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농협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한 납입 출자분과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역농협 임원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68페이지, 22번 중앙회 등 선거 관여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7조 1항을 위반해서 중앙회 및 조합원 등이 공직선거에 관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조합 및 중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처벌을 받는 대상이 중앙회 등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역형은 불가능하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벌금액이 범죄 억제에 충분한 위하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중앙회 등 선거 관여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거는 법인에 벌금이 나가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현실적으로 1호 적용 대상이 법인밖에 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징역형은, 자유형은 부과를 못 하니까 벌금형밖에 부과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

○소위원장 윤준병 관여한 자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법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관여한 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2항에 자연인도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꼭 법인에 국한된다고 딱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70페이지, 23번 간부직원 등 이사회 의견 진술 조항 정비에 관한 개정안은 간단한 자구 수정 사항으로 보입니다. 간부직원 등이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그 해당 간부직원 등의 자율적 출석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간부직원 등 이사회 의견 진술 조항에 대해서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72페이지 24번과 74페이지 25번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24번 외부 회계감사 연례화에 대한 개정안은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 이상인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의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이고 또 74페이지 25번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은 외부 회계감사 주기의 단축과 더불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72페이지의 24번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연례화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의 25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외부 감사 연례화를 몇 년을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4년 하고 나면 2년은 지정한 감사……

○전종덕 위원 그거 말고, 72페이지 24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년마다 합니다.

○전종덕 위원 1년마다 하시겠다 이걸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500억 이상도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500억 원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전종덕 위원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 하겠다 이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매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외부 감사인을 통한 회계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사항들이, 아마 지금은 4년 기준으로 전 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했을 테니까 그 감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정조치나 무슨 문제점이 나왔을 텐데, 아니면 중요한 비리 같은 것이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조합의 회계감사는 자체 감사고, 자기들이 하고……

○**이만희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있다, 몇 건이고 얼마 정도 있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100개를 하면 6건 정도가 지적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만희 위원** 어떤 지적사항들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감사를 하게 되면……

○**이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부 감사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회계감사를 벌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감사해 놓은 결과들을 가지고 이것이 회계법상 절차적인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친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그런 사항들을 할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규정에 안 맞았을 때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회계감사 한다고 하니까 외부 감사제도 자체가 와서 우리가 상상하는 회계감사를 하는 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뭐냐 하면 매년 외부 감사를 받는데 보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한정, 부적정 이 의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이나 채권자가 이 회계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이 제대로 했네 안 했네, 일단 그게 주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그걸 외부기관이 감사를 해 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맞는데, 맞다고 하는데 회계감사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그게 우리가 무한정으로 그냥 공짜로 다 해 주면 매년 할 수 있지요, 하는 것 그 자체는. 그런데 여기서 비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조합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다 받으면, 1년에 1100개 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보통 한 조합당 1000만~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1000만~2000만 원 들어가면 한 200억? 20억? 어떻게 되나, 20억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4년에 하던 걸 1년으로 당장 줄이기보다는 적어도 중간단계를 한번 거쳐 보는 게 어떠냐는 거지요, 한 2년 정도로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게 아마 조합 측에서는 부담이 적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를 자기들 주주나 이런 사람에게 공개하게 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회사도 그렇고요. 회계감사를 받아서 이게 맞습니까라고 해 주는 게, 부담이 안 된다면 매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좋아요. 저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신 뜻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임미애 위원님, 2년으로 일단 중간단계 해서 한번 가지지요.

○임미애 위원 저는 새마을금고처럼 자산 규모에 약간의 차등을 두면서 1년 단위 혹은 2년 단위를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이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법안 발의의 취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실 거고 발의하고 나서 농협 측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마을금고가요 올해 6월 달에 법을 개정을 했고 행안위에서 이 법안 개정을 했고 시행령도 개정이 다 됐거든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자산 8000억 이상 상근감사 의무화하는 건 저희랑 똑같고요. 3000억 이상은 매년 외부 감사를 하고 500억 이상은 2년 주기로 외부 감사를 하는 걸로 여기 7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규모가 새마을금고하고 농협은 비교할 게 아닙니다. 농협이 훨씬 큼니다, 물론 지역농협의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모두 다 이것을 규모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하자라는 것보다는 규모를 차별화해서 1년 혹은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수정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규모 정하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미애 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이만희 위원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1000개의 대상이 1000만 원씩을 만약에 지불한다 이러면 얼마예요?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100억.

○이만희 위원 100억이에요? 100억 같으면 이게 사실은, 전체 1100개 같으면 그중에 10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000만 원짜리도 있을 텐데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정상적인 회계감사가 아니라 재무제표라든지 각종 서류양식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작성이 됐는가를 보는 그런 정도의 회계감사 같으면 과연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정도로 일단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대통령령에 정하는 규모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으로 정한다’, 그 정도 하면 되겠지요? 1년 내지 2년.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소위원장 윤준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다.

○임미애 위원 대통령령에 규모에 따라서 어느 만큼 이상은 1년, 어느 만큼 이상은 2년 이렇게 한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런 내용으로, 대신에 구체적인 문구는 저한테 위임해 주세요. 그 취지만……

○임미애 위원 그러면 4년은 아닌 거고……

○소위원장 윤준병 아닌 거고 줄여서.

○임미애 위원 최소 1년 내지 2년 단위로 감사를 하겠다는 거는……

○소위원장 윤준병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년은 대부분 끝나고 나서

하면 책임을 못 묻고 오히려……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회계질서를 바로잡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데 4년은 너무 형식적이어서 중간에 점검은 해야 된다. 그런데 비용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그 내용은 1년 내지 2년으로.

○이만희 위원 2년 정도로 하되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적정하게 하면 되겠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문구는 그런 취지로……

○이만희 위원 매년 하는 거는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구는 저한테 위임을 좀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그런데 위원장님, 방금 그렇게 2년으로 고치시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그걸 약간 고쳐야 됩니다. 연도별로, 4개 회계연도……

○소위원장 윤준병 매년이라는 내용을……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약간 고쳐야 되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그 문구도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위임해 주세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부칙은 나중에……

○소위원장 윤준병 부칙은 앞의 내용 해야 부칙이 들어가지요.

33쪽, 간선제 폐지할 건지 여부에 대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 33쪽 전에 26쪽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윤준병 26쪽 어떤 내용이요?

○임미애 위원 26쪽에,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 개정안의 배경을 보면 실제로 중앙회가 지역 회원조합들한테 소위 무이자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회원조합 길들이기 하는, 그래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왕창 주고 아니면 매우 인색하게 집행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수정의견에서 136조의 4에, 다른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요 이것 공개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좀 첨가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공개 사항은 넣어야 된다. ‘다만 직후에는 사업·조합별 지원 규모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 내용을 넣자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예, 공개 여부를 넣지 않으면……

○소위원장 윤준병 회원한테 통지하는 거는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자, 지금 말씀은 그런 뜻이지요?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자?

○임미애 위원 실제로 조합장들이 이 상황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조합장들한테는 전체적인 내용이 통지가 돼요.

○임미애 위원 조합장은 본인 것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전체적인 연간 사업별 내용은……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모든 회원에게 통지된다 그랬습니다.

○임미애 위원 모든 회원이 회원조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아니고.

○소위원장 윤준병 조합장들……

○임미애 위원 조합원이 아니고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요. 조합장들에게는 모두 가는데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된 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임미애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원조합한테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회원조합한테는 모두 통지하도록 돼 있으니 공개를 하는데 일반 공개는, 지금 일반인들이나 조합원들한테 공개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넣어야 될 거고……

그 정도 일단 하고 가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지금도 내부 포털 시스템에 띄우기 때문에 조합 들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부분은 그렇게 그 정도 하고요.

33쪽, 직선제·간선제 말씀하시지요.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의 적폐 중 하나가 간선제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개혁 입법이라면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선제로 가야 된다.

몇 군데는 사실상 대의원들 몇 분 해 가지고 영구 집권하듯이 해요. 그리고 예전에 우 리 지적한 것처럼 그분들이 조합원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 가지 고 비리가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잖아요. 그것 온상이에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저도 동의하고요. 선거제도만 놓고 보면 저도 위 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선거제도……

그렇게 하고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로 하세요. 직선제의 시대에 간선제 운영하는 것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5개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만희 위원 품목조합은 포함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품목조합은 별도, 지금 이번 개정안으로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만희 위원 아니, 우리가 개혁 입법이라고 하면서 품목조합의 간선제를 인정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만희 위원 하면 다 같이 하자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내용은 같이 이번에 협의를……

○이만희 위원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이것 달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품목조합이 간선제가 많은 이유가 뭐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품목조합은요, 지역조합은 지역에 몰려 있는데 품목조합 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조합이 된 거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품목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그냥, 예를 들면 사과 품목 같으면 경북에 있는 사람도 되지만 저기 충청도에 있는 분도 품목조합이 된 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소위원장 윤준병 품목별 조합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은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도 품목별 조합은 지금처럼 놔두어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전국에 흩어져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하여튼 이렇게 하시지요.

품목별 조합은 사실 입법적으로는 그쪽에다 근거 규정을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다음에 한번 또 입법을 할 거니까요. 그때 한 번 더, 대안이 있으시면 입법안을 내 주시면 그때 이 취지에 맞게끔 정리하기로 하시지요.

저는 이것은 일원화해야 된다, 직선제로. 그렇게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저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동의한다고요. 다만 아까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자꾸 연계시키지 마요. 그것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비상임……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만희 위원 얘기는 한번 들어 보시지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잠깐만요.

뒤에 설명할 거니까……

○이만희 위원 얘기를 해 보시지요,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의원선거를 하게 되면 비상임 하는 경우에는 아예 권한을 안 준다면 대의원제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고요. 상임으로 한다면 직선제를 해서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선제는 99%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500명이나 됩니다. 이 조합 제도가 너무 잘 맞지 않아서 같이 검토해……

저도 사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위원 차관님, 차관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500개 비상임조합장들 전부 다 간선제로 돌려야 그 논리가 맞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 말씀은 제도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비상임조합장은 아무 의무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직선제로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내가 직선으로 뽑힌 가장 정당성이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500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어떻게 비상임조합장이 아무 권한이 없어요? 말 같은 얘기를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중요한 권한은……

○소위원장 윤준병 실제 상임이사가 하는 권한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실제 결재는 비상임조합장이 다 해요. 무슨 소리야! 내용도 잘 모르

시면서 자꾸 우기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결정은 상임이사가 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비상임조합장은 관여를 못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거기 신용 분야만 상임이사가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나머지는, 조합 전체 운영은 조합장이 다 하고 있다고요.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우기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교육·지원, 중앙회 사업을 하는데요. 가장 핵심인 신용사업 이런 것들은 관여를 못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신용사업만 그렇다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런데 왜 전부를 못 한다 그래요? 신용사업만 그래. 여신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비상임조합장이 다 짚어서 주면 다 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런데 뭘 못 한다 그래요, 못 하기는?

그래서 임기제 하면 실질적으로 상임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이 아무 상이점, 다른 점이 없어서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내용이 현재 지역조합의 소위 비상임조합장들의 가장 적폐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었고요.

직선으로 비상임조합장을 뽑아 놓으니까 돈이 되는 어떤 여신 쪽이나 다 관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 주는 것, 같이……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대의원으로 했더니 안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 제 말씀은……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겠다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만희 위원** 여기 안 하고 있는 대의원 간선제도 어느 어느 농협입니까, 5개인데? 한번 불러 봐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를 들면 서울의 관악농협이라든지……

○**이만희 위원** 대의원 간선이 관악이고. 제일 얘기 많은 관악, 11선 했다는 그것 아닙니까? 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5개가 어디냐 하면요, 서울서남부농협이 관악입니다. 그리고 서울농협, 서울축산농협, 부산축산농협, 남서울농협.

○**이만희 위원** 아니아니, 5개 농협. 품목농협 말고 지역농협 5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역농협입니다. 이것 지역으로 묶인 농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위원장 윤준병 뭐 20개도 아니구먼. 다 합해서 5개구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것은 지역농협이고요. 15개가 품목농협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축협도 사실은 지역농협이라 보기도 어려워, 그것.

○문대림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어쨌든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조합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농협의 대표권을 갖고 있고 직원 임면권을 갖고 있고 인허가권 또 행사 결정권 등을 갖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문대림 위원 일정 부분만 법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책임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자유롭다, 가볍다 이런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 말씀입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임조합장과 차이가 없는 권한을 행사 하면서 책임은 가볍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련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조합장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한다든가 또 상임이사와 책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농협과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상임·비상임이사를 불문하고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똑같이 져야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고의나 또 과실, 중과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삼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지나칠 정도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에는 그런 책임에서 빠져 나오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논의해서 책임, 그러니까 업무의 분담 구조라든가 책임 구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얘기를 하니까 공회전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이, 예전에 21대 때 이것 직선제 하기로 사실 상임위 의결까지 하고 다 동의받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당시……

○소위원장 윤준병 그때도 부처에서 조합장 직선하는 것……

이것은 간선제, 실제 비상임조합장의 역할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적폐를 유발하는 온상이야, 이게.

저는 위원님들 동의하셨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비상임조합장이 연대책임을 졌던 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법적 문제기 때문에 연대책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하면 상임·비상임 불문하고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 했으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그런데 빠지는 구조로 설계가 된 게 저는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들에 대해서 보완할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설계하시고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얘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의원 간선제 하고 있는 5개 조합에 대해서 직선제로 옮기자는 게 이번 개정안 내용이 맞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비상임조합,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비상임조합장 500여 명을 모두 간선제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만희 위원** 차관님, 아니에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면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제가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간선제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간선제로 하고 있음에도 비상임조합장들이 일정 부분 개입을 하고 또 심하게도 개입을 하잖아요. 그것을 직선제로 바꿔 주면 그게 더 노골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런 취지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 취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딱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의도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문금주 위원** 그런데 차관님, 그 논리가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장님, 제가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짧게.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비상임조합장은 명예직으로 만들고요. 간선제 해서 명예직으로 해라 이게 사실 맞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하게. 왜냐하면 비상임이니까요. 대신 직선제로 뽑게 되면 권한을 준 거니까 상임으로 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이게 아마 양극단일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만약에 간선제를, 나는 비상임인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당신들이 대의원 해서 간선제로 해라 그런 문을 열어 놓자는 거지 제가 해서 그것 만들어 주겠다, 비리를 봐주겠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알았고요. 지금……

○**전종덕 위원** 비상임이사를 뽑아요? 안 뽑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조합장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 가지고 자꾸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

○**문대림 위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사람은 출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소위원장 윤준병** 직선제 관련된 내용은 대세기 때문에 5개 가지고, 더더구나 서울농

협, 골드바 이런 것을 만들도록 방치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것은 직선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연임 제한과 관련된 내용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이것 표결하시지요, 이 조항은.

○이만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이견이 있으시니까……

○이만희 위원 여기 지금 저 혼자밖에 없는데 뭘 표결을 해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수용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들어 보시지요.

○이만희 위원 비상임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도의 변경들은 앞에 말한 5개 조합을 직선제 하는 차원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르지요.

○이만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의견이라든지 꼭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토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표결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표결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얘기했고……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만희 위원님만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해야지요, 그러면.

○이만희 위원 가능하면, 제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아니면 내용을 설명을 해서라도 설득을 하는 게 우선적인 사항이지 무슨 표결이 만능입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만희 위원 정부 측에서 찬성하시는 이유가 뭘니까, 이것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 모 농협은 12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 보면 장기 재임하는 동안 자기 친척들 다 심어 났고요. 너무 비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만희 위원 아니, 아까 직선제 할 때는 그렇게 그쪽 편들어서 반대하더니만 이것은 또 엉뚱하게 얘기하시네?

○문금주 위원 뽑는 것하고 연임하고는 다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다른 문제고.

저는 필요하다 하는 게 정말 장기 되는 쪽은 말씀 들어 보시면 비리가 너무 심한…… 제가 추측인데 너무 문제가 심해서 저는 3선 이상은 반드시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있으면 또……

○이만희 위원 무슨 자료,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선 이상 조합장들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리가 심해서 3선으로

제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선 이상의 조합장이 운영하는 그 조합의 비리 현황을 데이터로 가지고 계십니까? 초선이라든지 재선이라든지 3선 조합장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데이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듣는 얘기가, 항상 높은 차수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현장 의견이어서 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선교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이만희 위원** 들리는 의견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하시는 발언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오히려 비상임조합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반 정도니까요, 반 정도.

○**김선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추측성으로 근거도 없이 비리가 많고 이런 게 발생이 되니까 이것을 제한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치고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장단점을 따져 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김선교 위원** 왜 굳이 그걸 지금 하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추측한 게 아닙니다. 제가 들었고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농협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연임 제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간단히 좀 정리해 주세요.

○**이만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선출직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협동조합입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조합원들의 의견도 한번 모아 보시고 또 4선부터는 비리가 많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들은 얘기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처리하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 얘기하지 말고요.

이 비상임조합장의 3선 이상 연임에 대해서 21대 국회 내내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또 중앙회하고 관련도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여론도 농식품부를 통해서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현상

과약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자본 규모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임조합장을 하다가 연임을 목적으로 자본금이나 이걸 테크니컬하게 바꿔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바꾸고 장기 집권을 의도적으로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신용관계도 관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출할 때 보면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사실상 상임이사들한테 오더 주어서 자기한테 이권…… 그러면서 신용과 관련해서는 책임도 안 지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조합장이라고 전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현재 현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병폐의 온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연임 제한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걸러야 된다, 자정 기능이 되게끔.

비상임과 상임이 권한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상임만 오히려 제한하고, 자본금과 이런 것을 가지고 비상임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잘못된 비리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 그동안에 이렇게 정리된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금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문금주 위원**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농림부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임조합장 연임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나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무수하게 나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다만 오늘 아마 자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농림부에 자료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앞의 직선제 논의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연임 제한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비상임조합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윤준병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대도시조합이 아니라, 도시조합이 아니라 지역의 조그마한 조합들이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조합원들을 만나 보면 이 문제 범으로 제동을 걸어 달라라는 요구를 사실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더 늦어지지 않게 범으로 연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타당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21대 후반에 많이 논의가 됐다 이런 말씀 또 하셨는데 제가 21대 후반기에는 농해수위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행안위에 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논의된 과정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때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아마 또 다수 위원님들은 그때 당시에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하반기에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처리하자는 얘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요 그때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됐으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4선 아니면 3선 이상의 비상임조합장들의 비리가 많다 이랬으면, 적어도 지금 이 논의가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당대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또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자본금을 바꿔서 테크니컬하게 비상임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어느 조합이 그렇게 돼 있는지 또 몇 개 조합이 그렇게 돼 있는지 이것 자체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임피에 위원님도 조그마한 조합에서 오히려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취합이 그동안 저는 충분히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당사자들인 현재 조합장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들에 대한 제시를 저는 여기 소위에서 정말 충분히 제출하시고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저는 이것은 자료의 문제나 그동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데이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농협에 가면 농민들의 요구고, 사실은 11선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제도를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의원들도 3선 연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고 그동안에도 많은 병폐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것을 알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조합장들만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대 흐름에도 맞고 투명하게 농협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 제도를, 연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고요 표결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소위가 12월 4일 날 또 있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현재는 그렇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그사이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을 위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조항을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제안이시고요.

그다음에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79쪽 부칙 제3조를 보시면 지금 논의되는 이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행스럽게도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컨대 재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4선까지가 보장이 되는 거고요. 3선 하시는 분은 5선까지가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당선이 되시면 이렇게 두 번의 임기가 사실상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의 부칙으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번 정도의 임기가 보장되면 그 기간 중에 조합장, 상임·비상임 떠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조합을 이끄셔야 좋을지는 충분히 부칙 조항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의견 잠깐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자, 여기서 판단하겠습니다.

표결하시지요.

○임호선 위원 표결 안 하시고……

○문금주 위원 충분히 수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그 부칙 조항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용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선교 위원 12월 4일 날 깊이 논의해 가지고 농림위에서……

○소위원장 윤준병 12월 4일 날은 또 논의할 게 있으니까요. 이것 가지고 또 리바이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만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임호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선교 위원 차관! 여기에 농림부 의논도 있고 농협중앙회의 의견도 있고 이런 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농협중앙회에서도 의견을 냈잖아요. 장단점을 다 따져 가지고 정말 이게 필요시 했을 때……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말 이야.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하세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무슨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법률안 개정을 할 때 개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내가 소문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설득이 필요하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맞지 이것을 가지고 표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좋아요. 그 말씀도 옳은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검토된 내용 또 농협중앙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사실은 동의했어요, 농협중앙회에서.

그러니까 동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또 자기들 변명용으로, 자기들은 사실 현직 조합장들에게 보이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제스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좌우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이것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만희 위원님이……

○이만희 위원 지금 상당히 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들어 보세요.

○이만희 위원 뭘 들어 봐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농협중앙회 얘기가 뭘 모욕이에요, 모욕이!

○이만희 위원 내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소위원장 윤준병 자, 표결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그런 것들은.

○소위원장 윤준병 뭘 사과해요? 사과하기는!

○이만희 위원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중앙회에서 동의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만희 위원 중앙회에서 동의하면 내가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중앙회에서 동의했었던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모욕이에요?

○이만희 위원 중앙회에서 동의하면 위원이 그것을 따라야 돼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만희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중앙회에서 동의했으면 위원이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겁니까?

○김선교 위원 내일모레 해도 되는 걸 왜 오늘 하려 그러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준병 중앙회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임호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지금까지 여야를 떠나서 우리 농해수위는 농업·농민·농촌을 위해서 농협이든 부처든 아마 한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언성이 고성이 오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위원장님이나 또 여야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법안심사에 임하고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사실 표결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된다거나 극단적인 그런 예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농해수위에서만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삼일 후면 또 법안소위가 있다고 하면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해서…… 이 조항 하나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됐고.

그래서 저는 지금 무리하게 표결하시기보다는 이 조항만큼은 부처에서도 조금 더 그리고 필요하다면 농협 측의 필요성이라든지 현장의견 같은 경우도 조금 종합하셔서 원만하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임호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크게는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비상임조합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병폐나 폐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많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 논의도 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농식품부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 건이 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21대 때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위원이 위원장님 빼고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의 법률안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근거 자료가 있을 때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개정안에 동의하는 부분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번거롭기는 하지만 자료를 좀 더 찾아서 제시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조정하는 의견인데요.

농림부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도 충분히 다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 그 내용들 최대한 빨리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실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저는 이게 오늘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법안도 아닌 것 같고 다음 법안 소위 때 그때 의결만 하면……

○이만희 위원 아니, 4일 날 자료 제시해 가지고 그 자료 토대로 보고 처리하면 되는 거지요, 내용을 봐서. 무슨 표결을 해요, 표결을?

○문금주 위원 그때 의결하는 걸로 하고 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상임조합장과 관련해서 현직 조합장들의 예를 들면 기본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로비고 목소리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나 조합장을 제외한 농협 직원들은 이게 대표적인 적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을 빨리 바꿔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합장들의 저항이 있다 보니까 중앙회에서 그동안에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전임 중앙회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의 연임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그것을 해 주면 이 내용은 저항이 있지만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제대로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의견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또 우리 위원회가 또 우리 소위 위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예전에 겪었던 그런 일련의 잘못된 과정 이것을 눈치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이견이 있지만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매듭을 짓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4일 날 이 내용을 첫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했다가.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하세요.

○이만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 발언 들으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전에 하셨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아마 위원장님은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조합 관계자들에 로비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조합장님한테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

대하니까 마치 조합장한테 로비라도 받은 사람처럼 취급하시는데 그 발언 취소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왜 취소를 합니까?

○이만희 위원 정말 부적절합니다. 제가 마치 여기서……

○소위원장 윤준병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래요, 그것은. 아니, 실제 알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고요.

○이만희 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닌 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일반화하시면 되겠습니까?

○송옥주 위원 특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21대 때 그랬다는 얘기에요.

○문금주 위원 특정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만희 위원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문대림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만희 위원 끝내고 하십시오, 하시더라도.

위원장님, 저는 정말로 농협의 어떤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을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관철시키고 싶으시면 충분한 자료 준비해 주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으로서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건,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로비를 받아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 이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은 아마 로비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아마 지난번 중앙회장하고도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요.

○송옥주 위원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냅뒹요.

○이만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송옥주 위원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실 건 아니지요.

○문대림 위원 어쨌든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장기집권의 폐단, 지배구조 투명성의 제고, 타 상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해서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설계 자체를 한번,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아까 조합의 자율성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선택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데 연임 제한도 조합의 자율성이나 선택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영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 연임 제한을 그렇게 우리가 경직되게 해석할 필요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더 농림부가 제도의 재설계 차원에서 비상임조합장에 대한 고민 하시고요.

오늘 얘기 나온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 해서 사전에 중화시키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4일 날 논의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연임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보류하기로 하고.

53쪽 인사추천위원회 그 내용 정리하시지요.

공개모집과 관련된 내용 하세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으로 하되 위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원칙으로 하는 내용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습니까?

○**문금주 위원** 여기를 절충선에서 원칙으로 하되 어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랄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한다든지 이렇게……

○**문금주 위원** 그래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주는 걸로 그렇게……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원칙으로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문금주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만희 위원** 전문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어느 전문기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헤드헌터와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헤드헌터와 같은 기관이 있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인사를 전문으로 해서……

○**소위원장 윤준병** 문구와 관련된 내용은 어차피 4일 날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기?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주기적 지정제도 아까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추가하셨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방향은 아까 원칙으로 하는 것은 수용이 됐고, 문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서 넣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외부 회계감사 연례화를 일부 조합은 2년마다 하시는 걸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 추진사업비……

○**임미애 위원** 1년마다 아니고 1년 내지 2년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그러니까 1년 하는 조합도 있고 2년 하는 조합도 있는 걸로 바꾸셨기 때문에 74페이지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같은 경우는 매년 외부 감사를 하는 걸 전제로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반영해서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금주 위원 대통령령으로 바꾸면 되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주기는 1년이든 2년이든 연도와 관계없이 주기적인 거여서요.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규모가 큰 조합은 매년 하고 규모가 작은 조합은 2년마다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그러니까 1년마다 받는 기관은 4번 감사를 받고 2년 지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2년마다 받는 기관은 2번 받고 1번 지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구를 어떻게,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위임해 주신다면……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일단 어나운스(announce)를 하고요.

이 내용은 우리 수정의견대로 하자는 제안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은 지역농협은 연속하는 2회의 감사를 말한다)를 받은 지역농협의 경우 그다음 연속하는 회계연도(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은 지역농협은 1회의 감사를 말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들어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김선교 위원 뭘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금주 위원 상의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부분 큰 틀은 주기는 2년 또는 1년으로 한다. 그리고 자본 규모가 큰 데는 1년, 작은 데는 2년으로 한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런 취지니까 그 내용은 일단 그렇게 정하고 4일 날 문구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시면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마지막으로 부칙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부칙에 대해서는 윤준병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되,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또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또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조합장 선출,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같이 추가를 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적용례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에 관해서 아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신 내용이 77페이지 표에 보시면 공포 즉시에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정관에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수정의견에서 공포 즉시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6개월 정도 기간을 더 두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부칙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일단 연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은 4일 날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합의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진도를 나가서 다른 것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연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열띤 논의가 있는 바람에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은 추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송옥주 윤준병 이만희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업정책관 윤원습